

##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 (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)

### 1. 복제물제출의 원칙

#### (1) 등록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필수

- 등록 신청물의 복제물 반드시 제출, 단 유일한 원본은 제출 불가
-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, 규격 등 최상의 상태로 제출
- 이미 등록된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제물 제출을 생략함(단, 계속적 간행물의 경우 제외)

#### (2) 1저작물 1등록 원칙

- 시 1편, 그림 1점, 작곡 1곡, 사진 1점마다 각각 등록을 신청
- 동시에 여러건 신청시에는 1개의 CD 또는 DVD에 복제물 일괄 수록 가능

#### (3) 등록 대상 저작물 전체를 제출

- 제출된 복제물은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등록 후에는 보호기간 동안 보존됨
- 저작권은 구상 또는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에 대해 발생하고, 제출된 복제물에 대하여만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미치므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거나 요약,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전체 저작물을 대신할 수 없음
- 등록 대상 저작물과 관련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나 신청서류상 기재된 등록사실(저작자 성명, 창작 또는 공표연월일 표기 등)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복제물의 재제출이나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이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등록대상이 되는 저작물만을 등록사실과 배치되는 표기 없이 제출하여야 함

#### (4) 디지털 파일 제출 권장

- 등록된 복제물은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보존되며 등록사실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, 장기보관에 따른 변형·훼손 등의 위험이 적은 디지털화된 파일 형태의 제출을 권장
-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복제물의 경우, 해당 파일과 함께 상용 프로그램 또는 뷰어로 확인 가능한 파일을 함께 제출
- 복제물 파일의 명칭은 등록 신청한 저작물의 제호로 일치시켜 제출하되, 1건의 등록신청에 여러개의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(예 : 건축설계도서 30쪽) 제호와 일련번호로 저작물 제호와 파일개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

### 2. 건축모형, 건축 복제물 제출 예시

- 건축물 전체 외관이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묘사한 복제물 제출
- 건축설계도는 건물의 입·배·측면도의 이미지 파일을 필수로 제출하며, 층별 평면도, 단면도, 조감도 등도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 가능
- DWG와 같이 CAD 등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, 반드시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형태도 함께 제출
- 건축물 모형 및 실물 건축물의 경우, 전체적 형태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촬영한 전체의 사진 또는 영상 제출
- 세부적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 확대 촬영 사진 또는 영상 추가 제출